

대법원 2017도19497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8. 5. 15. 정유라와 관련된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및 학사비리 등 사건에서, 피고인 김경숙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7 판결)

I. 사건 개요 및 소송 경과

■ 사건 개요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사람이고, 정유라는 그 딸로서 승마 특기생으로 '이화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합격하여 2015. 3.경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였음
- 최경희(과학교육과 교수)는 2014. 7. 29.~2016. 10. 20.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정치외교학과 교수)은 2014. 8. 1.~2016. 10. 30. 이화여대 입학처장으로 재직하였음
-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최서원 ⇨ 당시 문화체육부 차관 김종 ⇨ 피고인 ⇨ 남궁곤 ⇨ 최경희」가 차례로 공모하여, ① 남궁곤이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입시 면접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정유라가 높은 면접 점수를 받도록 하여 위력으로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방해, ② 남궁곤, 최경희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교무회의에서 정유라를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사정안을 의결하게 하여 위계로 교무위원들의 신입생 모집과 사정 업무

방해

- 이원준(체육과학부 교수), 유철균(필명 이인화,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등과 공모하여 수업에 전혀 또는 거의 참석하지 않은 정유라가 출석과 학점을 인정받도록 하여 위계로써 이화여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 등을 방해
- 위 사안 등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증

▣ 제1심 및 원심 판단

- 제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함
- 원심은 제1심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 처리를 하지 않고 실제적 경합범으로만 처리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 파기한 다음,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음

▣ 피고인의 상고 제기

-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음

II. 대법원 판단 요지

1. 이화여대 입시 관련 업무방해

- ▣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

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함(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 「최서원 ⇨ 당시 문화체육부 차관 김종 ⇨ 피고인 ⇨ 남궁곤 ⇨ 최경희」가 차례로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이 부분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및 업무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2. 이화여대 학사 관련 업무방해

- 원심은 정유라가 2016년 1학기에 수강한 '운동생리학' 등 교과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원준, 유철균 등 사이에, 정유라에게 출석인정 및 성적평가상의 특혜를 주기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업무방해 및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Ⅲ. 판결의 의의

-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희, 대학 총장인 최경희, 입학처장인 남궁곤 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에 의해서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입학 업무에 관한 최종 권한이 대학교 총장에게 속한다고 하더라도 총장이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면접위원들이나 교무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 피고인이 최서원, 남궁곤, 최경희 등과 공모

하여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관련 업무방해 범행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분명히 밝힌 판결임